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10호서식] <신설 2015.7.7.>

부기등기(附記登記)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

보조사업 개요	
보조사업명	
보조사업자	이름 생년월일 농어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

부기등기(附記登記) 말소 대상 부동산	
주 소	
물 건[1]	명칭 면적(㎡)
말소 사유	
사후관리기간	당초 : 연월일 ~ 연월일 변경 : 연월일 ~연월일

이 부동산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부기등기(附記登記)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직인

210㎜×297㎜[백상지 150g/㎡]